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협의·변경협의를 대상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사유 추가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4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추가	3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사유 추가	11
※ 참고자료	14
1. 현행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14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예시	17

I. 제안경위

2024년 9월 6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 및 제46조의2).

Ⅲ. 검토의견

1.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추가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 대상 지역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협의¹⁾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20조(재협의) ①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

1)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동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를 아닌 재검토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2.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사유 추가’에서 따로 검토함

현행	개정안
② (생략)	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변경협의) ① ----- ----- ----- ----- ----- ----- -----경우(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재협의) ① ----- ----- ----- -----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u>
4.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변경협의) ① ----- ----- ----- <u>경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u>----- ----- ----- ----- ----- ----- -----.
② ~ ④ (생략)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 -----

현행	개정안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 ----- <u>사유(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됨²⁾.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지정·관리 주체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개소수	1개 (경남 진주시·사천시 일원)	394개

※ 출처: 환경부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대상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9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발하는 등 협의한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하도록 규정³⁾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 따른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구분	재협의	변경협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	■ 대상지역을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원형보전 또는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 이상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등	■ 규모가 5% 이상 30% 미만 증가하는 경우 ■ 원형보전 또는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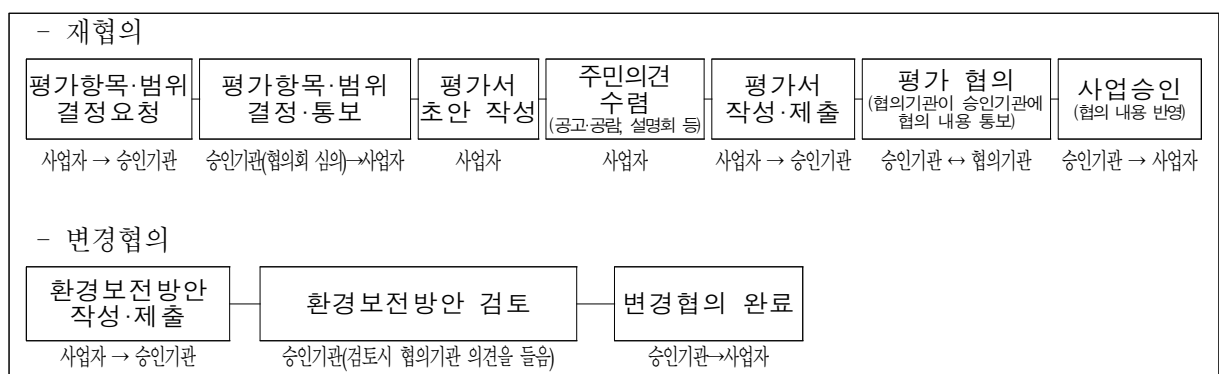
- 3)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재협의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 이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시설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원형보전 또는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 이상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시설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원형보전 또는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5%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기타 협의내용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협의를 거쳐 확정·승인 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협의를 거친 후 자연종인 경우로서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등

※ 출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후 해당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되어 야생생물 특별보호지역이나 야생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재협의 및 변경협의 절차]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

별보호구역이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 피해 감소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상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사업계획 등을 승인한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4) 또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 착공 전에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가 추가로 발견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조치명령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사업 시행 시 멸종위기종 피해방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임(참고자료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예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사유 추가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사유⁵⁾에 대상사업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생략)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u>

- 5)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⑥ (생략)	<u>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u>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 추진으로 환경훼손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는 ①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검토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② 현행 규정상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⁶⁾,

6)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대상사업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규모·내용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규정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1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참고자료

1. 현행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은 일정규모 이상 증가 등을 하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며, 정책계획은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협의 대상임

재협의	변경협의
① 대상지역을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증가되는 부분이 아래 면적 이상이어야 함 ㉠ 도시지역(녹지제외) : 6만제곱미터 ㉡ ㉠지역 외 지역 : 1만제곱미터 ㉢ ㉠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값이 1 [㉠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500억원이상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 한정), 환경영향평가대상 도로건설사업, 철도건설기본계획의 경우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②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변경협의를 한 경우 제외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①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이상 30% 미만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② “재협의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 도시지역(녹지제외): 6만제곱미터 ㉡ ㉠지역 외 지역: 1만제곱미터 ㉢ ㉠와 ㉡지역을 모두 포함: 아래 산출값 1 [㉠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행위 면적 5천제곱미터 ③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는 그 증가되는 부분이 아래 면적 미만 ㉠ 도시지역(녹지제외) : 6만제곱미터 ㉡ ㉠지역 외 지역 : 1만제곱미터 ㉢ ㉠와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값이 1 [㉠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④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서, 500억원이상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 한정), 환경영향평가대상 도로건설사업, 철도건설기본계획의 경우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⑤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재협의 ②”에 해당하는 면적 미만 ⑥ 협의 내용 통보시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발생 시 재협의를 하거나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변경협의를 승인기관의 권한이나 이 중 일부는 승인기관이 변경협의를 할 때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재협의	변경협의(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경우)
① 사업·시설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 다만,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자연환경훼손·오염물질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②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 이상인 경우 ③ 아래 사유로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자연환경훼손·오염물질배출이 없어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훼손 및 오염물질배출행위를 하려는 경우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④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후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착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주변여건이 경미하게 변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경우 제외 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①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설규모의 변경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제외) - 시설·규모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증가된 사업규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 부지면적의 15%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업종 포함)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협의 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되거나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되는 경우 -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 초과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기관장등에 제출하여 변경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승인기관장등은 이를 검토하면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재협의	변경협의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①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③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협정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 추가 증가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 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제외) ④ 부지면적의 30%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⑤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⑥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 출처: 환경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예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총 16페이지>

I. 사업개요

- (사업명)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원
- (사업규모) 247,593㎡ (수용인구 2,119인)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교통부
- (사업기간) 2019~2029년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면적 30만㎡이상 사업 및
산지전용허가 면적 20만㎡ 이상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산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II. 협의내용

1. 총괄

- 동 협의내용과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 본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승인·신고·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과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야 함